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화 등〉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207018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4
2. 제정안의 취지	8
3. 조문별 검토	14
가. 총칙(안 제1장)	14
1) 목적 규정	15
2) 정의 규정	16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나. 민간위탁 추진체계(안 제2장)	20
1)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자료 등 제출 요구권	23
2)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6
3)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민간위탁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7

다.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 등(안 제3장)	29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33
2) 공개모집 원칙	35
3) 수탁기관의 선정 시 고려사항	37
4)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38
5) 위탁계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	39
라.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안 제4장)	41
1)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4
2) 위탁기관의 감사	45
3)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46
4) 행정안전부장관의 종합평가 및 후속조치	47
마. 법정위탁 관리(안 제5장)	49
1) 위탁기관에 대하여 법정위탁을 법정위탁 외의 민간위탁으 로 전환하도록 노력 의무 부과	50
2)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	51
바. 보칙(안 제6장)	53
사. 부칙	55
1) 특례 및 경과조치 규정	57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4. 12. 27.
3. 회부연월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관한 재검토기한을 두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

조부터 제7조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을 정부 전체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위탁기관 소속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각 사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민간위탁 운영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11조)

위탁기관은 법령에서 수탁기관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안 제14조)

민간위탁 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마. 관리·감독(안 제18조)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관은 관리·감독의 결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종합평가(안 제2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매년 종합평가를 하고, 그 종합평가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사.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24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의 경우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체계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하 “제정안”이라 함)은 21대 국회에 제출(2020.6.26.)되어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①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각 위탁기관에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각 위탁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은 법정 수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그 선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결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하고, 그 종합평가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내용임.

제정안은 다음과 같이 총 6개 장 및 2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음.

【제정안의 구성】

구분	조 및 조 제목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행정능률 향상, 책임성 확보 등 목적 규정
	제2조	정의	민간위탁, 법정위탁 등 용어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24조는 이 법 우선 적용
제2장 민간위탁 추진체계	제4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행안부에 설치(존속기한 5년)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제6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부처에 설치(존속기한 5년)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제8조	민간위탁 기본계획의 수립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제9조	민간위탁 시행계획의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제3장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 등	제10조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국민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사무
	제11조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
	제12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특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불복 시 이의신청 가능
	제13조	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계약 체결 의무화(법정위탁 제외)
	제14조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 개	약체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제15조	재위탁	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시 법령에 근거 마련
	제16조	수수료 등의 징수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등 징수 가능
	제17조	재계약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구분	조 및 조 제목		비고
제4장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평가	제18조	관리·감독	수탁기관 관리·감독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특례	위탁계약 해제·해지 관련 이의신청은 제12조를 준용
	제20조	감사	필요 시 수탁기관 감사
	제21조	성과평가	수탁기관 성과평가
	제22조	종합평가 등	전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제5장 법정위탁의 관리	제23조	법정위탁의 관리	법정위탁에 대해 공개모집으로의 전환 노력 의무화
	제24조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	주기적으로(5년 내) 법정위탁 존속 여부 재검토 의무화
제6장 보칙	제25조	민간위탁 현황의 제출 및 정보공개	행안부에 민간위탁 운영현황 제출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기관 임직원 및 심의위·운영위 위원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제2조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위탁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3조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부처법 시행 전 체결된 위탁계약도 법 시행 후 해제·해지 가능
	제4조	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행안부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기본계획 수립
	제5조	민간위탁 사무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 민간위탁 운영현황 등 공개
	제6조	재위탁에 관한 특례	법 시행 2년 후 재위탁 금지 조항 적용
	제7조	최초 종합평가 시기에 관한 특례	법 시행 다음 연도까지 종합평가 실시
	제8조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에 관한 특례	법 시행 후 법정위탁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제9조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을 법 시행 후 1년으로 규정

제1장에서는 법률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총칙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2장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추진체계를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등 민간위탁 시 위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제4장에서는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와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종합평가 등을,

제5장에서는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민간위탁 중 법정위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6장에서는 민간위탁 현황 제출 및 정보공개와 공무원이 아닌 자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2. 제정안의 취지

민간위탁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는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¹⁾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위탁 규정」”이라 함) 제3장을 들 수 있음.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임위탁규정」 제3장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수탁기관과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1) 「법제기준과 실제」(2024), 국회사무처, p.729

【민간위탁에 관한 현행 법령 내용】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② (생략)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장 주요내용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

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개별법률 위주로 추진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부적절, 장기간 특정기관에 독점적 수탁비율 과다,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부재, 위탁계약 정보 미공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파악됨.²⁾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2024년에 실시한 중앙부처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점검결과(2023.12월 기준)에 따르면, 총 42개 부처

2) 행정안전부는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부처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중요사무까지 위탁,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령·고시 등으로 수탁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특정기관에 집중된 위탁 과다, ③ 법적 근거 없는 재위탁을 통해 위탁사무 처리의 책임소재 불명확, ④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성과에 대한 평가 부재, ⑤ 위탁·수탁기관 의무사항 미규정 및 준수율(50%) 부진 등을 제기함.

【 2024 중앙부처 민간위탁 운영실태 점검결과 】

가 1,643건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 중 완전독점 형태의 민간위탁은 88.7%(1,457건)에 이르고, 완전경쟁을 통한 민간위탁은 2.6%(43건)에 그쳐 독과점 3.2%(53건)를 포함하면 민간위탁에서 경쟁성은 거의 배제되는 것으로 보임.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96.6%(1,587건)는 개별법률에 근거하는 위탁에 해당하고, 3.4%(56건)는 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더하여 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는 ① 계약체결을 통한 민간위탁 추진 51%(830건), ② 사무처리지침 통보 57%(934건), ③ 사무편람 승인 53%(878건), ④ 감사실시 85%(1,404건) 등 평균 61.5%에 불과함.

사무 선정의 부적절	독점위탁 만연	법적 근거 없이 재위탁	관리·감독 부실	관리규정의 규범력 미약
부처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중요사무까지 민간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례 존재	-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령·고시 등으로 지정하여 특정기관에 장기적 독점위탁 만연('23년 1,443건, 88%) '23년 전체 민간위탁 사무(총 1,643건) 중 같은 수탁기관에 5년 이상 계속 위탁한 사무 비율이 72%, 10년 이상 위탁한 사무 비율이 55%	- 법적 근거 없이 다른 민간기관에 재위탁하여 위탁사무 처리의 책임소재 불명확 「위임위탁규정」(대통령령)에 재위탁 관련 조항 부재	- 수탁기관에 대한 부처의 지휘·감독이 적절한지 객관적 확인 곤란 - 위탁성과에 대한 평가 부재	- 위탁·수탁기관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규범력 미약(준수율 50%) * 관리·감독 준수율('23.말) ① 위·수탁기관 간 계약체결: 51% ② 사무처리지침 작성: 57% ③ 사무편람 작성: 53% ④ 정기감사 실시: 85%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중앙부처 민간위탁 운영실태 점검결과 요약】

- 42개 부처에서 총 1,643건을 3,270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 근거법령 : 개별법률(1,587건, 96.6%), 위임위탁규정(56건, 3.4%)
- 위탁형식 : 법정위탁(76.5%), 지정위탁(11.3%), 계약위탁(12.2%)
- 수탁기관 : 공공기관(49.5%), 금감원(23.7%), 협회(12.3%) 順 (사무수 기준)
- 경쟁성정도 : 완전독점(88.7%), 독과점(3.2%), 제한경쟁(5.5%), 완전경쟁(2.6%)
 ※ (완전독점) 1개 수탁기관을 정하여 위탁 / (독과점) 2~3개 수탁기관을 정하여 위탁
 (제한경쟁) 입찰조건 등을 정하여 공개모집 / (완전경쟁) 제한조건 없는 경쟁모집
- 주요 위탁사항 : 확인·조사(19.7%), 검사·승인(12.8%), 신고·등록(9.2%) 順
- 규정 의무사항 : 계약체결(51%), 사무처리지침 통보(57%),
 사무편람 승인(53%), 감사 실시(85%)

자료 : 행정안전부

이처럼 현행 규율 체계에서는 개별 위탁기관 차원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및 감사 등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제도운영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평가,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원칙,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투명하고 종합적인 민간위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취지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 관리의 일

관성 확보는 개별 위탁기관 차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민간위탁
운영과는 상충관계이므로, 구체적으로 조문별 심사 시 그 내용이
개별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지를 유의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³⁾

3)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① 제정안이 중복적 규제를 포함하고 ②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효율성을 저해하며 ③ 행정안전부로의 행정권한 집중을 초래하고 ④ 일률적인 공개모집 의무는 위탁사무의 특수성 및 효용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제정안에 대하여 수용 곤란 의견을 제시함.

3. 조문별 검토의견

가. 총칙(안 제1장)

제정안은 법률의 목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위탁 추진체계,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원칙, 수탁기관 선정 절차,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 또는 단체 나. 법인 또는 단체의 기관 다. 개인 3. “위탁기관”이란 사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의 장 및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법정위탁”이란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민간위탁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민

제 정 안
간위탁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1조 및 제24조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1) 목적 규정

안 제1조에서는 “민간위탁 추진체계,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원칙, 수탁기관 선정 절차,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

이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에 설치), 민간위탁운영위원회(위탁기관에 설치),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의 종합평가 등 종합적인 민간위탁 추진체계의 구축에 대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이 포함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2) 정의 규정

첫째, 안 제2조제1호는 사무를 위탁하는 주체인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이를 인용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은 조직 관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⁴⁾

“행정기관”을 ①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②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사무위탁 주체인 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⁵⁾에 따라 지방자치

4) 행정 조직 관계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부, 처, 청과 각호에서 정하는 6개 위원회 및 3개청을 말함.

5)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단체마다 지역의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조례 또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회계부정 및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⁶⁾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 및 방향 제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민간위탁하는 경우를 제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정안의 개별조문에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무력화’ 전국 확산 우려”, 내일신문, 2025.1.13., “민간위탁금 이대로 좋은가] 매년 늘어나는 위탁금 구멍 막아라”, 중부일보, 2024.11.20., “민간 사업에 예산 지원·회계 조작 눈 감고 손실 보전...얼빠진 공무원들”, KBS뉴스, 2024.8.6.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3조에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일반법적인 지위에 있음.

한편, 안 제3조 단서는 안 제11조⁷⁾ 및 제24조⁸⁾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1조는 공개모집(법정위탁은 제외)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4조는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며 법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수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
- 7)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위탁기관은 법정위탁을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위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대상 기관의 규모, 인력,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대상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3. 대상 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
4. 책임능력과 공신력
⑤·⑥ (생략)
- 8) 제24조(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 ①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위탁업무 수행상황에 관한 점검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정위탁에만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재검토기한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안 제11조와 관련해서는 개별법률에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원칙과 달리 규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원칙 등을 적용하는 데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적용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안 제24조와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법정위탁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위탁 제도운영의 실효성 및 활성화 측면에서 우선 적용의 타당성이 인정됨.

나. 민간위탁 추진체계(안 제2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민간위탁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제 정 안
제4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민간위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 정 안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
 3. 관계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상황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 ⑤ 제4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구를 받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현지조사의 대상이 된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소속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6항에 따른 관리·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6. 제20조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위탁의 종료 또는 수탁기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정 안

③ 운영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수탁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민간위탁 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본계획(이하

제 정 안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 운영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민간위탁 운영의 현황 및 실태
3. 민간위탁 운영의 여건 변화와 전망
4. 민간위탁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민간위탁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민간위탁 시행계획의 수립) ① 위탁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위탁기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자료 등 제출 요구권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상황에 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자료 등 제출 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두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⁹⁾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 등의 요구는 개별 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고,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행정기관 또는 수탁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 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 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9) 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① 민간위탁 관련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② 민간위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사항을, 운영위원회는 ① 민간위탁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 등의 사항을 각각 심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두 위원회 모두 민간위탁 관리에 중추적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음.

위탁기관으로부터 해당 요구 등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안 제5조제4항제3호는 심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지조사는 대상기관에게 행정부담이 될 수 있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은 행정기관 간 협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주성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런데 제정안에서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어떠한 시민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법문의 표현상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되지 않는 시민단체도 위원 추천이 가능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소지도 있으므로,

위탁기관의 소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법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민간위탁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안 제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제9조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위탁기관이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예시)】

◦ 민간위탁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민간위탁 운영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
- 민간위탁 운영 관련 개선 대책
-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 체제 도입에 관한 사항 등

◦ 민간위탁 시행계획 주요 내용

- 민간위탁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
- 민간위탁 현황 등

자료 :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은 현행 민간위탁 관리 체제 아래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 종합되고 일관적인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는 민간위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이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어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예시를 통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안 제8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민간위탁 운영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로, 안 제9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민간위탁 운영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등 대통령령으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하여 제정안은 민간위탁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방향에 대한 국회의 견제·감시와 정부의 국회에 대한 책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참고로, 「전기사업법」¹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¹¹⁾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

10)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 등(안 제3장)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위탁계약의 체결,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제 정 안
제10조(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①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의 서비스 공급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법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운영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운영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위탁기관은 법정위탁을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2. 민간위탁 사무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기관의 모집 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위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대상 기관의 규모, 인력,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대상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3. 대상 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
4. 책임능력과 공신력

⑤ 위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특례)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이 공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3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
4.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7.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① 위탁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가안전보장·외교·국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15조(재위탁)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단체, 법인·단체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재위탁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의 일부를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재계약) ① 위탁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안 제10조는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표에서 제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민간위탁 사무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10조제2항)】

-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성과 측정의 용이성

제정안에서 제시된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기준은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상충된 가치를 조화시키고 민간 역량 활용이라는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0조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항의 취지는 개별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하는 원칙을 민간위탁의 일반법으로서 제정안은 이를 다시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2) 공개모집 원칙

민간위탁을 형식적으로 분류하면 민간위탁사무 및 수탁기관의 명칭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정위탁, 법령에 근거를 두고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수탁기관의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위탁, 계약에 의한 계약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현재 법정위탁의 비중이 약 76.5%에 이르고 지정위탁은 11.39%, 계약위탁은 12.2%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안 제11조제1항은 법정위탁을 제외하고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안 제22조에서는 법정위탁도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비율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위탁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타당한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을 수용할 경우 행정규칙으로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있는 지정위탁에 대해서도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현재 법정위탁과 지정위탁으로 분류는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일률적 기준에 따르기보다 위탁기관별 자체적·임의적 판단으로 결정되므로, 법정위탁과 지정위탁 간 형평성 우려가 있

을 수 있음.

또한 고시의 해당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지정위탁을 법정위탁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개모집을 회피하는 방식 등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는바, 이 경우 민간위탁의 약 95%를 법정위탁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법정위탁 및 지정위탁 수탁기관 명시 사례】

구분	위탁사무	위탁근거규정	수탁기관 (관계 행정기관)	수탁기관 명시 규정
법정 위탁 (법령)	해외건설업 신고 수리, 해외공사 상황 보고 접수	해외건설 촉진법 제34조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8조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청)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 위탁 (고시)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공사 시공실적 접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산업기술보호교육 등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3) 수탁기관의 선정 시 고려사항

안 제11조제2항제3호는 모집대상 제한 사유를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으므로, ‘공개 모집 결과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등 예시를 통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임.

또한, 안 제11조제4항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① 업무 운영 능력, ②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③ 비용 절감 능력, ④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 원칙에 따라 선정하여 민간위탁 수행의 경쟁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4)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특례

안 제12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위탁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항).

안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수탁기관의 선정이라는 행정청의 처분¹²⁾에 대한 간이불복절차이고, 이의신청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정식 불복절차인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선택적 관계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¹³⁾.

따라서 안 제12조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수탁기관의 선정은 일종의 사업면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 및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이 인정됨. (홍준형 (2011) 「행정법」 p.1042 참조)

13) 「법제기준과 실제」(2024), 국회사무처, pp.661~662

5) 위탁계약의 내용 및 위탁기간

안 제13조제2항은 위탁계약(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간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위탁계약의 내용]

- ①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 ②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
- ③ 위탁기간
- ④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
- ⑤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⑥ 수탁기관의 의무
- ⑦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⑧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첫째, 위탁계약에 포함될 내용으로 열거되고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해 보임.

다만,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가 모호하고,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수탁기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규정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등 대표적인 사항을 예시하여 하위법

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위탁기간의 범위를 3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위탁기관의 자율적 운영 필요성, 위탁 사무의 특성, 중앙부처 위탁계약 운영현황,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탁기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공개모집을 통한 계약위탁 200건 중 111건(56%)이 3년 이내로 운영되고 있고(2024년 중앙부처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점검결과 참고), 서울·부산·대구·경기도 등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례를 고려하였다고 설명함.

하지만, 위탁 사무별 성격 및 요구되는 전문적·기술적 수준 등이 다르고 위탁기관의 자율적 운영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위탁기간의 범위를 3년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¹⁴⁾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¹⁵⁾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음.

14)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 ③ (생략)

④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라.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안 제4장)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사, 성과평가,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 정 안
제18조(관리·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위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 정 안

라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특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감사)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법정위탁의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관한 평가를 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제 정 안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종합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위탁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결과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이나 민간위탁 운영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에 종합평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⑥ 종합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이의신청의 특례

안 제18조제4항은 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는 안 제18조제4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12조 관련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 경우 위탁계약은 공법상 계약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해제 또는 해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2) 위탁기관의 감사

안 제20조제2항은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각각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원활한 감독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제정안의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민간의 법인 또는 단체인 수탁기관의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탁기관별 책임을 묻는 형식에는 징계 외에도 임원의 직무정지 등 다양할 수 있는 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문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¹⁶⁾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¹⁷⁾, 「산림보호법」¹⁸⁾ 등 유사 입법례가 있음.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1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18) 「산림보호법」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을 문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안 제21조는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수탁기관의 성과관리를 통해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안 제21조는 성과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사항 및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수탁기관으로서의 성과평가가 어떻게 수행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위탁 사무는 그 종류와 성격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지표도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위탁기관의 자율성 및 위탁 사무별 맞춤형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기관 스스로 성과평가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과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평가 기준에 맞추어 체계적·통일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 보다 적절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행정안전부장관의 종합평가 및 후속조치

안 제22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종합평가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민간위탁 관리 체제 아래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제도운영의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하려는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특히, 안 제22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간위탁의 운영 및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2조제4항은 종합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로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 민간위탁 업무의 체계화 및 엄격한 업무 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기본이 되는 사항을 통합 규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로 보이나, 다음 사항과 관련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감독권을 가진 상급 행정관청이나 감사기관이 아닌 민간사무 위탁제도 운영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시정 요구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의뢰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임.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이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안 제22조제1항), 평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거나 자체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¹⁹⁾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율성 및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²⁰⁾에 따른 자체감사를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9)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감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임.

2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 7. (생략)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③ (생략)

마. 법정위탁 관리(안 제5장)

법령에서 민간위탁 사무와 위탁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법정위탁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으로 전환하는 등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23조),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안 제24조).

제 정 안

제23조(법정위탁의 관리) 위탁기관은 소관 법정위탁 사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위탁 외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운영 현황
2. 향후 민간위탁 사무 처리 여건의 변동 가능성
3.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

제24조(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 ①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위탁업무 수행상황에 관한 점검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정위탁에만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재검토기한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탁기관은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법정위탁의 종료 또는 위탁기관의 변경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정위탁의 종료 또는 위탁기관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제 정 안
한다. 이 경우 해당 심의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탁기관에 대하여 법정위탁을 법정위탁 외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 의무 부과

안 제23조에서는 위탁기관은 ① 민간위탁의 운영 현황, ② 향후 민간위탁 사무 처리 여건의 변동 가능성, ③ 경쟁체제의 도입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정위탁 사무를 법정위탁 외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정위탁이란 개별법률에서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민간위탁으로, 이 경우 수탁기관이 독점화되어 경쟁체제 구축이 어렵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의 취지는 위탁기관이 그 소관의 법정위탁 사무를 법정위탁 외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독점위탁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봄.

다만, 위탁기관이 법정위탁의 법정위탁 외의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

안 제24조에서는 위탁기관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의 경우에는 재검토기한²¹⁾을 설정하여 그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되(제1항),

재검토기한은 민간위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2항).

또한, 위탁기관은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법정위탁의 종료 또는 수탁기관의 변경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제3항),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법정위탁의 종료 또는 수탁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제4항).

안 제24조는 법정위탁에 대하여 일종의 일몰제(Sunset law)²²⁾를 규정한 것으로 법정위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 체제 구축을 통해 법정위탁의 남설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경쟁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21) 일정기간마다 위탁업무 수행상황에 관한 점검 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 등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정위탁에만 적용되는 기한임.

22) 엄밀한 의미에서 일몰제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그 존속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그 대상이 되는 규제·예산·사업 등이 폐지되는 것임. 제정안에 따른 재검토기한은 그 기한의 도래에 따라 법정위탁의 존속 여부 등이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그 검토의 결과에 따라 법정위탁의 폐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폐지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엄밀한 일몰제와 차이가 있음.

다만, 안 제24조제3항은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재검토기한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법정위탁의 종료 또는 수탁기관의 변경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 후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법률 또는 행정입법의 제·개정 절차²³⁾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90일 전까지로 설정된 심의 요청 기간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23) 주관 부처 입안 → 관계기관 협의 → 입법예고(최소 40일 이상) → 법제처 심사(이상 총리령 및 부령)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이상 대통령령) → 국회 심의 (법률)

바. 보칙(안 제6장)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5조),

수탁기관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6조).

제 정 안
제25조(민간위탁 현황의 제출 및 정보공개) ① 위탁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근거,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출 및 정보공개の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기관의 임직원과 심의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 제26조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심의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

로 의제함으로써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임.

다만, 제정안은 「형법」 제127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죄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4),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등에서는 공무원상 비밀누설의 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를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6), 「의료기기법」 27) 등 유사 입법례가 있음.

2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8. (생략)

9.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원·직원

2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쟁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7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의3에 따른 공급망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2. (생략)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27) 「의료기기법」 제4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략)

4.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보원의 임원 및 직원

사. 부칙

제정안의 부칙에서는 ①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일, ②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④ 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⑤ 민간위탁 사무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⑥ 재위탁에 관한 특례, ⑦ 최초 종합평가 시기에 관한 특례, ⑧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에 대한 특례, ⑨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을 이 법 시행 이후에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제1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소관 사무가 있는 위탁기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재위탁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위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재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최초 종합평가 시기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에 관한 특례) ①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이 법 시행 당시 소관 법정위탁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법정위탁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일) 국가등은 정주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 등의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례 및 경과조치 규정

안 부칙 제4조는 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최초로 수립하는 시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위탁을 하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정보의 공개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은 법 시행 이후 2년까지는 재위탁 받은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부칙 제7조는 제22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종합평가 중 최초의 종합평가 시기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시²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적용 사례에 대한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음.

다만, 안 제15조제1항은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및 원활한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령에 정한 사유 이외의 재위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8)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감사 결과, 성과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고 법 시행이 연말에 이루어질 경우까지 고려하여 기간 설정

현장에서는 일부 재위탁²⁹⁾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 법 시행 후에도 당초 계약기간 동안 재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39

29) 2024년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부처별 민간위탁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전체 민간위탁 사무(1,643건) 중 재위탁 사무(67건)가 차지하는 비율은 4%임.